

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2-176호

[  ] 통행의 금지·제한  
[  ] 차량의 운행 제한 ] 공고

「도로법」 제76조제1항·제2항, 제77조제1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

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[  ] 통행의 금지·제한  
[  ] 차량의 운행 제한 ] 을 공고

합니다.

2022년 04월 일

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직인

도로의 종류	일반국도	노선명	34호선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	차량	구간	남후교차로 (대구, 영천방향 Ramp)
기간	2022년 04월 22일(1일간) 09:00 ~ 17:00 (야간 통행 가능)		

이유 : 남후교차로 대구,영천방향 Ramp 구간 낙석방지망 설치공사에 따른 통제

그 밖의 사항

- 예천, 문경방향 회곡교차로를 이용하여 국도 진출입 가능

첨부서류: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